## 미리보기 페이지설정 출력 저장 2단비교검색 신구조문대비표

##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

(기획감사실) (시행일: 2017.09.21)

(제정) 2013.11.13 조례 제1732호 (전부개정) 2017.09.21 조례 제1875호

관리책임부서 : 보건의료원

연락처: 790-6831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선택예방접종"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- 1. 로타바이러스, 대상포진, 인플루엔자
- 2.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

제3조(접종지원대상 및 종류)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울릉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.

- 1. 생후 12개월까지(로타바이러스)
- 2. 5세 이상 60세 미만 지역주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사람(인플루엔자)가.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  - 나. 의료취약자 [국가유공자 본인, 장애등급(1~3등급). 집단시설수용자]
- 3. 60세 이상 65세 미만 지역주민(인플루엔자)
- 4.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(대상포진)

제4조(접종 횟수) 선택예방접종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로타바이러스(3회)
- 2. 인플루엔자(연1회)
- 3. 대상포진(1회)

제5조(접종 방법 등) 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 증을 지참하고 군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 한 다음 의사의 예진 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.

② 예방접종 의료기관은 예방접종한 사람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제6조(접종비용지원) 울릉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접종지원의 중단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- 1.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만 군에 두고, 사실상 타 시 · 군에 거주하는 경우
- 2. 그 밖에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 대상자로 군수가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 및 피해보상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7. 9. 21 조례 제1875호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